

전남지역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한농연전남도연합회 회장

이복음

1.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의 의의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동심과 질서의식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주고, 주부의 도시락 준비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하여 자국내 농업자원의 최대활용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은 급식재료 조달과 재배과정 교육, 농장체험 학습, 전통음식의 발굴과 시식회 개최 등 지역농업에 대한 애정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이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의 학교급식 운영과는 달리 학교급식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혜자원칙을 내세워 ‘돈 내고 사먹는’ 개념이지 교육

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하나로 급식과 농업을 연계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식탁마저도 예산상의 문제, 저 단가를 맞추기 위한 쌀 수입농산물의 유입에 따른 식재료의 불안전성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4년에 WTO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강한 우리의 식단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쌀마저 개방이 되어 버리면 대부분의 농가에서 더 이상 농사짓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쌀 농사의 포기는 지금 30%를 밑도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5%정도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은 저급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리농산물 소비토대가 무너져 우리농업이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 민족성과 주체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일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는 학교급식제도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보완장치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농산물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남의 경우 농도로서 지역농산물 소비책의 하나로 더욱 절실한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은 그럴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도 통상마찰우려라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이유를 들이대며 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우리농업,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전라남도 조례제정 주민발의운동의 추진배경이 된 것이다.

2. 경과 및 향후 활동방향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1월 6일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를 비롯한 농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사회단체, 여성, 노동, 종교, 생협단체, 일부 정치인등 175개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 속에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전남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3년 2월25일 정식으로 13개 광역단체, 10개 지역, 2개 준비위 227단체에 이르는 규모의 운동본부(상임대표 이복흙, 김광옥, 김목, 최태옥)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 운동본부는 그간 각종 설문조사와 현장조사사업, 학생 남도순례 대행진, 도민대토론회를 통해 전남지역의 우리농산물이용 학교급식조례제정의 여론을 확산시키며 도민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성과들을 모아 3월 7일 주민발의를 위한 행정사무절차(청구인 대표 이복흙 한농연전남도연합회 회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모든 지역, 단체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 작성에 나서 한달안에 법정 여건 3만3천명을 넘어 5만에 이르는 서명인을 받을 것이며 이후에도 여론압박과 지지자를 폭넓게 조직하기 위한 30만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농도인 전남에 있어선 이후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특히나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역할이 가장 큼을 명심하며 농업회생의 큰 흐름을 농도인 전남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청구인 명부 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한다. 또한 국민식생활 개선과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도지사, 교육청, 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배양
- ② 국내 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배분·소비 및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③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을 도모함
- ④ 학교급식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

제3조(정의)

-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②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국내 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 ③ '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④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 ⑤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 ① 전라남도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② 전라남도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국내 와 지역 생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남도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관할 아래 있는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 ① 전라남도지사, 시·군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전남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② 전라남도지사는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도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식재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④ 도지사는 시군자치단체 또는 전라남도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한다.
- ⑤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라남도교육청을 통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시·군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 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및 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기획관리실장, 해양수산환경국장
 2. 전라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국장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2인
 4. 전라남도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단체 1인
 6. 교사단체 1인
 7. 농민단체 2인
 8. 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9. 관련 전문가 2인
- ③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1인과 간사1인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지정판매업자의 신청) 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라남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3. 주요 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
4.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정판매업자의 의무)

- ① 지정판매업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농산물 공급내역을 매월말 기준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전라남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전라남도지사는 지정판매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해태 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 ① 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전라남도교육청 및 시·군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라남도지사는 보고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지정판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문